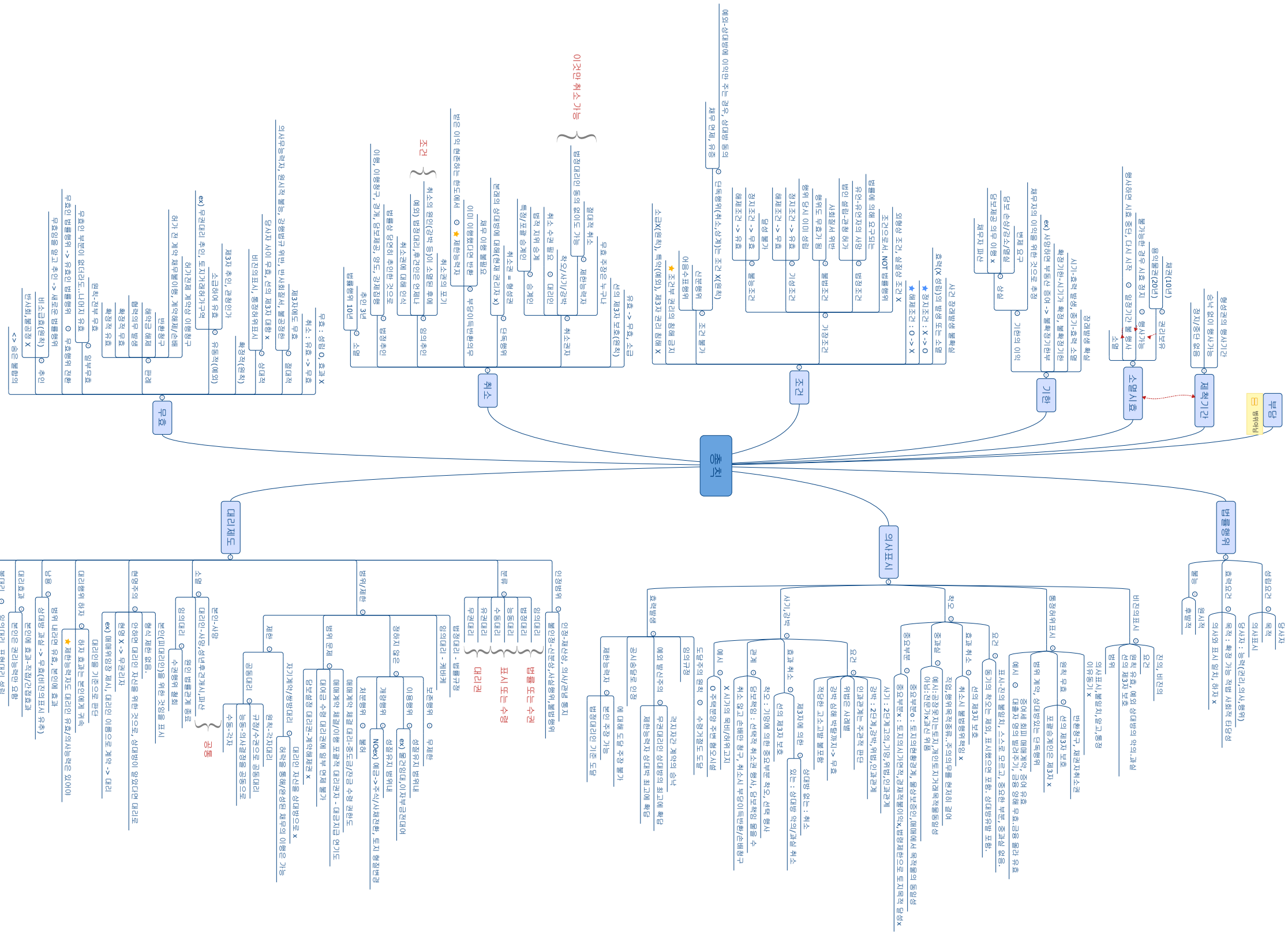
총칙
부당
B 부당하게
형성권의 행사기간
승낙 없이 행사기능
정지/중단 없음
제척기간
제권(10년)
형의 철회권
불가능한 경우 사효 정지 ○ 행사기능
소멸
권리보유
소멸시효
형사하면 사효 중단, 다시 시작 ○ 일정기간 불행사
장래발생 효력
시기-효력 발생, 종기-효력 소멸
확정기한-시기가 확정, 불확정기한-종기
ex) 사람이면 누 등산 중 여 -> 불확정기한부
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
변제 요구
담보 손상/감소/멸실
담보제공 의무 이행 x
상실
기한의 이익
채무자 파산
기한
조건
형성권 조건, 실 질상 조건 X
조건으로서 NOT 법률행위
법률에 의해 요구되는
유언-유언자의 사망
법 정조건
법인 설립-관청 허가
법률조건
사회질서 위반
행위도 무효가 됨
기정조건
행위 당시 이미 성립
정지조건 - 유효
기성조건
해제조건 - 무효
불능조건
당성 불가
정지조건 -> 무효
해제조건 -> 유효
불능조건
★ 해제조건 : O -> X
★ 정지조건 : X -> O
효력 X 상 (당)의 성 또는 소멸
사건 장래발생 불확실
조건 불가
신 분행위
조건 불가
★ 조건부 권리의 형 해 금지
이중수표행위
조건부 권리의 형 해 X
소급X(원칙), 특약(예외), 제3자 권 리 형 해 금지
선의 제3자 보호(원칙)
유효 -> 무효, 소급
무효 주장을 누구나
정대적 취소
제한능력자
취소권자
취소 수권 문요 ○ 대리인
법적 지위 승계
승계인
취소권 = 형성권
단독행위
법률행위 대해(원칙 권리자 X)
제한 이 형 불필요
이미 이 행위에 대해 변 론
제한능력자 ★ 사후 도 에서 수용 의 의사 표시 이 행위는 무효
취소권의 포기
취소권자 대해 인식
예외) 법정대리, 혼인은 언 제나
임의추인
조건
취소
취소의 원인(경)박 등이 소멸된 후에
법률상 당연히 추인 것으로
이행, 이행구, 경개, 담보제공, 양도, 강제집행
법률행위 추인
추인 3년
소멸
법률행위 10년
무효 : 성립 O, 효력 X
취소 : 유효 -> 무효
제3자에도 무효
정대적
의사무능력자, 일시적 불능, 강 행법규 위반, 반사회질서, 불공정한
당사자 사이 무효, 선의 제3자 대항 x
상대적
비진의표시, 통정허위표시
확정 적(원칙)
제3자 추인, 권청 인기
소급하여 유효
ex) 무권대리 추인, 토지거래허가구역
유동적(예외)
허가 전 계약, 채무불이행, 계약해제/손해
배상청구
법률행위
변론종결 전 추인 가능
해의금 해제
판례
행위의무 불법
확정적 무효
확정 적 유효
일부무효
유효-전부 무효
무효인 부분이 없다면 나머지도 유효
무효인 법률행위 ○ 무효행위 전환
무효인 법률행위 < 유효인 < 새로운 법률행위
무효임을 알고 추인 < 새로운 법률행위
비소급효(원칙)
추인
소급효
X
법률행위 성립 전 < 추인
무효

의사표시
성립
도달
시표시
의사표시 : 의식(사)의 (행위)
타인에 의한 적 적 사 회 적 법 률 행위
의사표시 불일치, 의사 x
의사표시 불일치, 의사 x
의사표시
의식
의사표시 불일치, 의사 x
의사표시 불일치, 의사 x
의사표시 불일치, 의사 x